2025년 인천중구지역자활센터
특정감사 결과

2025. 12.

인천광역시중구

법무감사실

새로운 도약 글로벌 융합 도시 인천 중구

1.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5. 10. 20.(월) ~ 10. 24.(금) (5일간)

○ **감사범위** : 2022. 1월 ~ 2025. 9월 추진 업무 전반

○ **감 사 반** : 4명 [감사팀장 외 3명]

○ **중점감사 사항**

- 지방보조금 집행사항의 적정 여부
- 회계처리 기준 준수여부
- 인건비 등 운영 관련 규정 준수여부
-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여부

2. 감사결과

○ 지적사항 총괄

행정상(건)				재정상(건/천원)			신분상(명)		
계	시정	주의	개선	계	회수 추징	추급	계	징계	훈계
10	2	6	2	2/227	2/227	-	-	-	-

[일련번호 : 1]

인천광역시 중구

주 의 요 구

[제 목] 운영규정 정비 소홀

[기 관 명] 인천중구지역자활센터

[내 용]

1. 업무개요

인천중구지역자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지역 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역할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의「자활사업 안내」 및 「인천중구지역자활센터 운영규정」 등에 따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활서비스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인천중구지역자활센터 운영규정」제50조(재무회계)에서 센터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출장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제86조(근무지외 국내출장 여비지급기준)에서 [별표 3]으로 일비, 식비, 숙박비 등을 정하여 지급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표] 국내여비 지급기준 비교

(단위 : 원)

구 분	일비 (1일당)	식비 (1일당)	숙박비 상한액(1박당)		
			서울특별시	광역시	그 밖의 지역
공무원 여비 규정(제2호 기준)	25,000	25,000	100,000	80,000	70,000
인천중구지역자활센터 운영규정	20,000	20,000	70,000	60,000	50,000

※ 센터 제출자료 재구성

「공무원 여비 규정」의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는 2023년 3월 2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여비 지급 기준액이 상향되었으나, 센터는 이를 반영하지 않아 「인천중구지역자활센터 운영규정」 정비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관계기관 의견

센터에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 향후 「인천중구지역자활센터 운영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중구지역자활센터장은

【 주 의 】

○ 「인천중구지역자활센터 운영규정」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인천광역시 중구

개 선 요 구

[제 목] 채용 면접 관련 인사위원회 위원 선정 부적정

[기 관 명] 인천중구지역자활센터

[내 용]

1. 업무개요

인천중구지역자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합리적인 인사관리 운영을 위해 「인천중구지역자활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직원을 채용, 관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인천중구지역자활센터 운영규정」 제14조(인사위원회) 제2항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1. 운영위원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 위원 2인 이상
2. 모법인 관계자 1인
3. 센터장
4. 실장

그리고 같은 규정 제18조(직원 등의 임용) 제3항에 따르면 직원은 센터장이 임용한다. 다만, 센터장은 필요할 경우 인사위원회에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제4항에서는 직원 임용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22조(직원의 채용절차)에 따르면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경쟁에 의하여 채용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다. 그리고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 시험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시험 순으로 실시하며, 모집공고 및 방법의 세부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표] 인사위원회 위원 참석현황 : 생략

그러나, 센터에서는 [표]와 같이 연번 1번 채용 시 응시자(합격자)가 연번 2번 채용에 응시했음에도 동일한 인사위원회 위원 3명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실이 있다.

□ 관계기관 의견

센터에서는 지역 내 인사위원 참여 가능 인원의 일정 및 근무 여건으로 인해 일부 채용 과정에서 동일 인사가 반복 참여한 것으로, 특정 인사에게 유리하거나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의도 없이 공정하게 진행하였으며, 향후 참여 가능한 인사위원 범위를 확대하고 중복 참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섭외 및 일정 조율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중구지역자활센터장은

【 개 선 】

○ 센터의 공정한 채용 관리를 위해 「인천중구지역자활센터 운영규정」에 면접위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인천광역시 중구

주 의 요 구

[제 목] 채용 전 결격사유 조회 소홀

[기 관 명] 인천중구지역자활센터

[내 용]

1. 업무개요

인천중구지역자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인천중구지역자활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직원에 대한 채용 업무를 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제2항에 따르면 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제19조제1항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또한,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부터 제1호의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 · 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9. 제1호의5부터 제1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표] 결격사유 조회 지연 현황 : 생략

센터는 감사 수감 기간 동안 [표]와 같이 채용 대상자 3명에 대해 채용일 전에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채용을 해야하나, 채용일 이후에 결격사유를 확인한 사실이 있다.

□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결과

센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그동안 입사 당일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확인 후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했다고 하였으나, 향후에는 채용 확정 전 범죄경력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마련하여 채용일 이전에 결격여부를 확인하도록 절차를 보완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센터 직원 채용 공고를 보면 최종합격 이후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제출하게 되어있고, 최종합격자 발표일과 채용일 사이에 상당 기간을 두어 결격사유 조회가 이루어진 후 채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센터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인천중구지역자활센터장은

【 주 의 】

○ 「사회복지사업법」 및 「인천중구지역자활센터 운영규정」를 준수하여 결격사유 조회 후 채용을 진행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인천광역시 중구

주 의 요 구

[제 목] 직원 복무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중구지역자활센터

[내 용]

1. 업무개요

인천중구지역자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안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인천중구지역자활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직원 복무를 관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인천중구지역자활센터 운영규정」 제40조(병가) 제4항에 따르면 센터장은 직원이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제41조(공가)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경우 실제로 필요한 기간으로 공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률이나 법령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업무와 관련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1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또한, 「2024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안내」 따르면 인건비(국비)

지원시설 종사자 및 시설장에 대한 공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을 위한 기준과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한 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2) 공가 제도의 운영상 유의 사항에 (나)에 따르면 복무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서장은 공가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지침 34페이지에 따르면 종사자의 복무와 관련하여 개인별 근무상황부 서식을 작성하고, 각 란은 본인이 직접 기재하고 '확인' 은 결재권자가 자필서명에 의해 결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42페이지에 따르면 병가를 사용하는 종사자는 46페이지의 [붙임 1] 병가 신청서 서식과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시설 내부 절차에 따라 승인 후 대체인력지원센터 및 市·군·구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44페이지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종사자는 사용일 이전에 시설장에게 신청(페이지 34, 개인별 근무상황부 [붙임 6]) 시 사전증빙서류를 필수로 제출하고, 기관장은 개인별근무상황부에 기재된 사유, 증빙서류 등을 확인 후 '확인' 란에 자필서명으로 결재하고, 시설 소관 市, 군·구 및 대체인력지원센터에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48페이지 [붙임 3] 자녀돌봄휴가 신청서(시설 제출용)에 따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병가 및 공가 사용 부적정 현황

- [표 1] 병가 사용 부적정 현황 : 생략

- [표 2] 공가 사용 부적정 현황 : 생략

센터에서는 [표 1]과 같이 병가 누적일수 7일 이상일 경우 진단서를 첨부해야 하나, 미첨부한 사실이 있으며, [표 2]와 같이 공가 사용 시 증빙자료를 미첨부한 사실이 있다.

나. 복무관련 서식 정비 소홀

센터는 직원의 복무를 관리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안내」 서식을 활용하지 않고, 병가·가족돌봄휴가 신청서 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민간정보/고유식별 정보 처리내역,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등에 대해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결과

센터에서는 진단서 제출 기준을 ‘7일 이상 연속 병가’로 오인하여 실제 규정인 ‘누적 7일 이상 병가’에 적용되어야 함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제출하면서, [표 1]의 미첨부된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표 2]에 대해 추가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중구지역자활센터장은

【 주 의 】

○ 병가 6일을 초과하여 사용한 병가에 대해 진단서를 첨부하시기 바라며,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안내」 서식을 활용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의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인천광역시 중구

시 정 요 구

[제 목] 예산 집행 기준 미준수

[기 관 명] 인천중구지역자활센터

[내 용]

1. 업무개요

인천광역시 중구지역자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예산집행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인천중구지역자활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인천중구지역자활센터 운영규정」 제86조(근무지외 국내출장 여비지급기준) 및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에서는 숙박비, 식비 등에 대한 지급기준을 별표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 [별표 2]에서는 1일당 일비는 최대 25,000원, 숙박비는 실비(서울특별시 100,000원 / 광역시 80,000원 / 그 밖의 지역은 70,000원), 식비는 1일 25,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표] 근무지 외 출장여비(식비) 지급 현황 : 생략

센터에서는 종사자 워크숍을 추진하면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식비 상한액을 초과하여 [표]와 같이 총 207,210원을 과다 지출한 사실이 있다.

□ 관계기관 의견

센터에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중구지역자활센터장은

【 시 정 】

○ 「공무원 여비 규정」, 「인천중구지역자활센터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출하시기 바라며, 과다 지급된 출장여비(207,210원)에 대해 회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인천광역시 중구

개 선 요 구

[제 목] 예산의 전용 처리 소홀

[기 관 명] 인천중구지역자활센터

[내 용]

1. 업무개요

인천중구지역자활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및 「인천중구지역자활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회계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6조(예산의 전용)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관·항·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또한, 「2025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실무 매뉴얼」 제2절 예산 8. 예산의 전용에 따르면 관간의 전용 및 동일 관내 항간 전용은 법인 이사회의 의결 또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거쳐 전용(법인 산하 시설의 경우 운영위원회 보고 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전용)하고, 동일 항내 목간 전용은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이 전용 가능하며,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관·항·목으로는 전용이 불가하고, 예산전용 금지 항목으로 인건비, 시설비, 상환금을 명시하여 인건비와 시설비 예산은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표] 예산 전용 처리 부적정 현황 : 생략

그러나, 센터에서는 [표]와 같이 예산전용 금지 항목인 시설비를 전용한 사실이 있다.

□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결과

센터에서는 「2025년 자활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라 사업비에는 사업장 개·보수 비용, 사업 운영에 필요한 도구·장비의 임차 또는 구입료, 재료비, 관련 전문가 인건비(수당), 자활근로사업단의 차량 구입 및 점포 임대료, 참여자 교육훈련비, 기타 수용비·행정부대경비 등 사업 운영 전반에 필요한 항목이 폭넓게 포함되며, 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비(목)'은 사회복지시설 회계에서 정의하는 신·중축비(건물·설비취득비) 개념이 아니라, 사업장 운영을 위한 장비·기구류 구입, 수선·보수, 운영환경개선 등 운영경비 성격의 항목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한 실무관리용 분류로서, 자활근로사업비 하위에 표기된 '시설비(목)'은 재무회계상 '재산조성비(211)' 시설비와는 법적·회계적 성격이 다른 항목으로 자활근로사업의 운영경비로 분류되어 집행될 수도 있는 범위에 해당하므로 예산전용 금지항목에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별표 4]의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자활근로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단별 예산을 "관)사업비 - 항)자활근로사업사업비 - 목)시설비사업비"가 아닌 "관)사업비 - 항)자활근로사업비 - 목)○○사업단사업비"로 구분하고, 세목으로 과목 명칭을 세분화하여 편성하는 것이 적정하였다고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인천중구지역자활센터장은

【 개 선 】

○ 향후 자활근로사업비 예산 편성 시 "관)사업비 - 항)자활근로사업비 - 목)○○사업단사업비"로 구분하고, 세목으로 "운영비", "환경개선비", "수선비" 등 과목 명칭을 세분화하여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

인천광역시 중구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 관련 서류 검토 소홀

[기 관 명] 인천중구지역자활센터

[내 용]

1. 업무개요

인천중구지역자활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에 따라 견적서·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를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16조(감독)에서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제17조(검사)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검사) 및 제65조(검사조서의 작성 생략)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 금액 3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검사 조서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0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에 따르면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 상대방에게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또한,「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관리 운영 지침」 [(안전관리과-1655 (2022.10.17.)] (2023. 1. 1.부터 적용)에서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해 중구에서 발주하는 도급・용역・위탁 계약 및 협약에 대해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및 계약 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징구 받도록 안내하였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및 착수 시 내역서 검토, 구비서류(이행보증서(각서), 수의각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등) 등의 제출을 확인하여야 하며, 준공 완료 후에도 준공신고서 및 준공 사진, 사후 정산 내역(4대보험,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 등), 기타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누락된 서류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검사조서(3천만원 미만 검사조서 생략 가능, 감독조서 갈음)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표] 2백만원 이상 계약 서류 검토 미흡 현황 : 생략

그러나, 센터에서는 [표]와 같이 연번 1번 외 27건의 사업에 대해서 청렴 각서, 비교견적 및 계약이행보증 서류 등을 누락한 사실이 있다.

□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결과

센터에서는 향후 모든 계약 관련 서류를 철저히 검토·제출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연번 26번 사업의 청렴각서를 확인하여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중구지역자활센터장은

【 주 의 】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관리 운영 지침」 등 관련 규정 등을 숙지하여 설계서 검토 및 첨부 내역 등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

인천광역시 중구

시 정 요 구

[제 목] 수입인지 부과 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중구지역자활센터

[내 용]

1. 업무개요

인천중구지역자활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는「인지세법」에 따라 공사, 용역, 물품 구매 계약 건에 대하여 업체로부터 인지세 납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제1항에 따르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제1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 및 세액(이하 “과세문서” 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과세문서	세 액
1~2. 이하 생략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이하 생략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호에 규정된 세액**
4~12. 이하 생략	이하 생략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표] 수입인지세 미납부 현황 : 생략

그러나, 센터에서는 [표]와 같이 수입인지(인지세 1건/20,000원) 납부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관계기관 의견

없음

조치할 사항 인천중구지역자활센터장은

【 시 정 】

○ 미매입한 수입인지 1건/20,000원은 추징하여 사후증빙(첨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공사 등의 계약 시 「인지세법」,「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준수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9]

인천광역시 중구

주 의 요 구

[제 목] 정기하자검사 및 만료검사 소홀

[기 관 명] 인천중구지역자활센터

[내 용]

1. 업무개요

인천중구지역자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정기 및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해야하며,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공사뿐만 아니라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하자담보가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11절(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 검사를 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계약 건에 대하여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표] 하자정기・만료검사 실시 현황 : 생략

그러나, 센터에서는 [표]와 같이 연번 1번 외 13건 사업에 대해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정기검사 및 만료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연번 7, 8, 9번 사업에 대해 공사임에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지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관계기관 의견

없음

조치할 사항 인천중구지역자활센터장은

【 주 의 】

○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여부를 검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 최종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0]

인천광역시 중구

주 의 요 구

[제 목] 수의계약 정보의 공개 업무처리 소홀

[기 관 명] 인천중구지역자활센터

[내 용]

1. 업무개요

인천중구지역자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 따르면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계약법」 제43조(계약과정의 공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발주계획, 입찰, 계약,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 감독, 검사, 대가의 지급 등 입찰, 계약, 계약의 이행과 관련되는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및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개 사항 및 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124조를 준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센터에서는 2022년부터 2025년도까지 모든 수의계약 건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아 수의계약 정보의 공개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관계기관 의견

없음

조치할 사항 인천중구지역자활센터장은

【 주 의 】

○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숙지하시고 수의계약 정보를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